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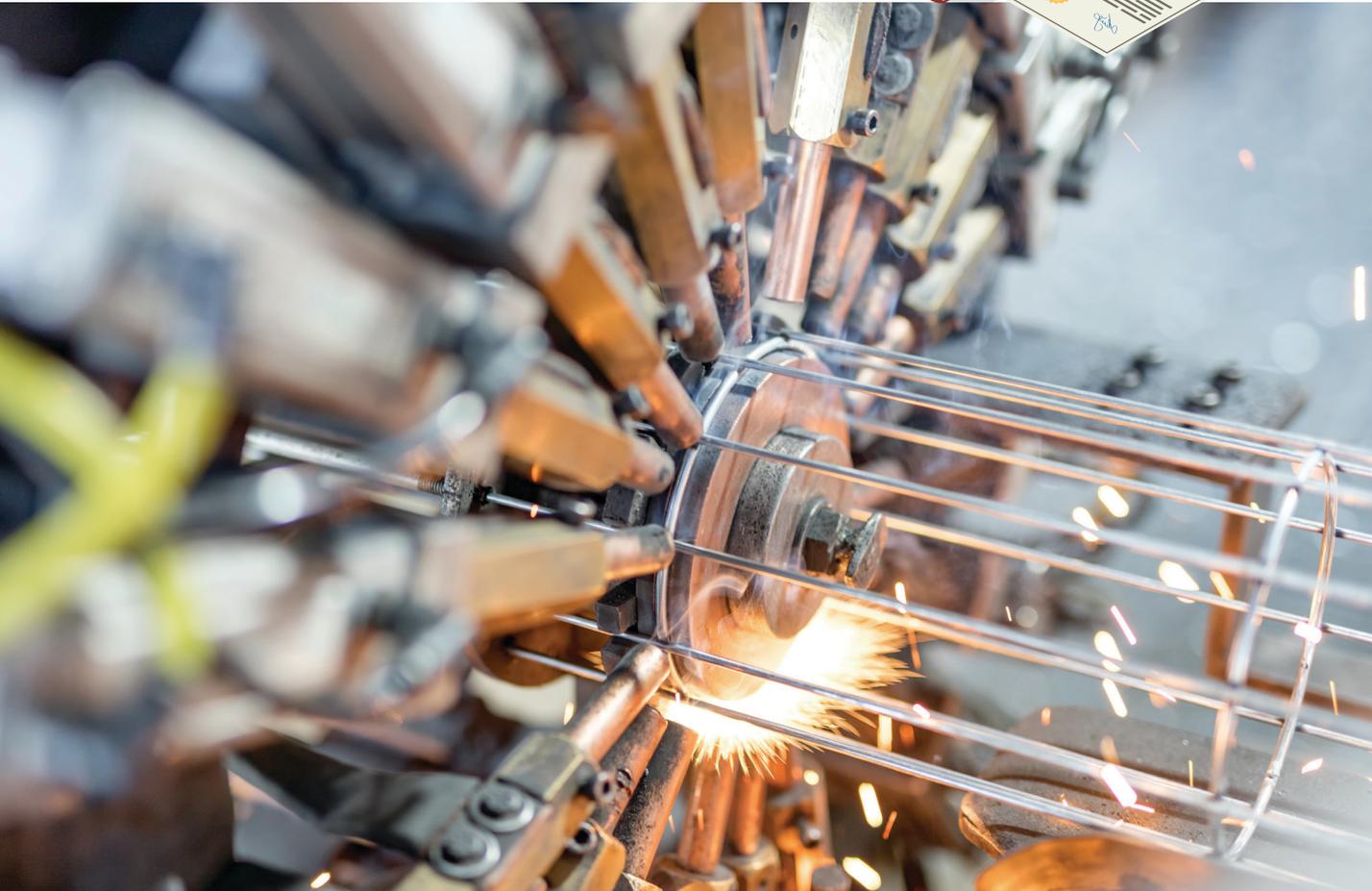
돌아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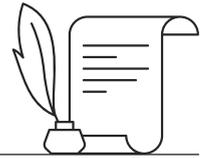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7)





제1차 개정('90. 1. 13.)

개정사유

근로기준법 제12조의 규정과 같이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개정내용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4차 개정('95. 1. 5.)

개정사유

사업주의 보고·출석 등 의무 사항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요구가 없어도 보고토록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개정내용

전문개정

제10조(보고의 의무)

- ①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차 개정('09. 2. 6.)

개정사유

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제10조는 시행규칙 제4조의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제4조를 위반해도 법 제10조 위반으로 벌칙을 과할 수 없는 문제 제기

- 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개요·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대책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개정내용

전문개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



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차 개정('10. 5. 20.)

개정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개정내용

제2항 :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 유족급여를 →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제28차 개정('10. 6. 4.)

개정사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에 따라 부처명칭 등 관계 조문의 용어 정비

개정내용

제1항 : 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제2항 : 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 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제32차 개정('13. 6. 12.)

개정사유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의 보고의무 강화

개정내용

제2항 : 단서 삭제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제10조의2 삭제 (2009.2.6.)

제13차 개정('02. 12. 30.)시 신설

신설사유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설내용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

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산업재해 기록·보존의무는 산업재해 발생보고(요양 4일 이상)와는 달리 모든 산업재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경미한 재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에 있어서는 최근 1년 내에 사망 또는 1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재해를 2건 이상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함

제24차 개정('09. 2. 6.)

개정사유

산업재해 발생기록을 제10조 개정에 포함함으로써 인하여 삭제

개정내용

삭제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정('81. 12. 31.)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